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2023. 0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신설(안 제2조)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규정과 관련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03. 15.~04. 03.) 결과, 의견 제출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제2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관계법령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연락처	(033) 330 -2124